

안전보건 관리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LS티라유텍(주)의 산업재해 예방체계를 구축하고,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·증진하며,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 범위)

이 규정은 LS티라유텍(주)의 모든 사업장 및 모든 근로자(정규직, 계약직, 임시직, 파견 근로자 등)에게 적용된다. 또한,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 및 활동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적용된다.

제3조 (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와 책임)

- ① 사업주의 의무 및 책임: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, 산업재해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, 인력, 시스템 등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. 또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, 이 규정의 준수를 독려한다. 특히,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골격계 질환 및 직무 스트레스 예방에 대한 노력을 기울인다.
- ② 근로자의 의무: 근로자는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및 이 규정을 준수한다. 또한,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보고하고,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다.

제4조 (규정의 우선)

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다.

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

제5조 (안전보건관리책임자)

- ① 선임: 사업장 전체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·관리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다.
-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 -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및 실행 총괄
 -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, 변경 및 이행 총괄
 -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, 실행 및 결과 조치 총괄

-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감독
-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
-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총괄
-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휘·감독
- 안전보건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리

제6조 (관리감독자)

- ① 지정: 안전보건관련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의 장을 지정한다.
- ② 관리감독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 - 작업 전 안전점검 및 작업 중 안전 관리·감독
 - 해당 작업과 관련된 유해·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대책 수립·실행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
 - 근로자의 작업복, 보호구(손목 보호대 등)의 점검과 그 착용·사용에 관한 교육·지도
 -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지휘
 - 해당 작업의 안전·보건교육 실시
 - 위험성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 이행 감독

제7조 (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)

- ① 선임: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한다. (내부 선임 또는 외부 전문기관 위탁)
- ②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 -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체적인 실행 지원
 - 위험성평가 지원 및 결과에 따른 개선 대책 수립 보좌
 -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지원
 - 사업장 순회 점검 및 지도, 산업재해 발생 위험 발견 시 즉시 조치 건의
 -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지원
 - 안전 장비 및 보호구 구매·관리 지원
- ③ 보건관리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 -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 관리 및 건강 상담.
 - 직업병 예방을 위한 보건 조치 및 작업 환경
 - 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지원 (바른 자세, 스트레칭, 정신 건강 등)
 - 개인 위생 관리 및 질병 예방 지도
 - 응급 처치 및 보건에 관한 기록·유지
 - 직무 스트레스 요인 파악 및 관리 방안 제시

제3장 안전보건교육 및 정보 제공

제8조 (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)

- ① 계획 수립: 사업주는 매년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, 교육 내용을 근로자에게 사전에 공지한다. 교육은 근로자의 직무, 작업환경 및 유해·위험 요인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② 교육의 종류 및 시간:
 - 정기 안전보건교육: 사무직 근로자 대상 매분기 3시간 이상 (온라인 교육 포함, 특히 VDT 작업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강화).
 - 채용 시 교육: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업무 배치 전 8시간 이상.
 -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: 작업내용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장비 도입 시 2시간 이상.
- ③ 교육 내용:
 -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및 의무 사항
 - 산업재해의 발생 현황 및 예방 대책
 - 사무실 안전 수칙 및 비상 시 조치 요령 (화재, 지진 등)
 - 올바른 작업 자세(VDT 작업 자세 포함), 스트레칭 및 휴식의 중요성
 - 개인 보호구의 올바른 착용 및 관리 방법
 - 건강증진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

제9조 (안전보건 정보 제공)

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
- ①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각종 안전수칙
- ②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 대책
- ③ 건강진단 결과 및 건강 증진 프로그램
- ④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 및 비상 연락망
- ⑤ 사내 안전보건 관련 게시판 운영 또는 온라인 정보 공유

제4장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

제10조 (위험성평가 실시 및 관리)

- ① 실시: 사업주는 사업장 내 모든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고, 해당 위험성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을 결정하여, 그 결과에 따라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. 필요시 위험성 평가는 별도의 규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.
- ② 평가시기: 정기평가(매년 1회 이상), 수시평가(작업변경, 재해발생 등)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③ 평가 내용: 물리적 요인, 심리사회적 요인, 인간공학적 요인 등을 평가한다.
- ④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:

- 공학적 대책: 사무기기, 키보드, 마우스 등 사무가구 및 기기 지원, 조명 및 환기 시스템 개선
 - 관리적 대책: 주기적인 스트레칭 독려, 휴식 시간 및 연차 사용 장려, 직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, 안전보건교육 강화
 - 개인 보호구 지급: 필요시 보호구, 보호대 등 지급
- ⑤ 기록 및 보존: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를 3년간 보존한다.

제11조 (건강관리 및 건강진단)

- ① 일반 건강진단: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정기적으로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한다.
- ② 건강진단 결과 조치: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 발생 시 적절한 사후관리(건강 상담, 근무 환경 개선, 직무 전환, 치료 지원 등)를 실시하고, 개인 정보 보호에 유의한다.
- ③ 직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: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심리 상담, 스트레스 관리 교육, 힐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

제12조 (작업 환경 관리 및 개선)

- ① 실내 공기 질 및 환경 관리: 사무실 내 적정 온습도, 조도를 유지하고,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하여 쾌적한 실내 공기 질을 확보한다.
- ② 사무실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: 사무실 내 통로 확보 및 정리정돈을 생활화하여 미끄러짐, 넘어짐 사고를 예방한다. 전선은 안전하게 정리하고, 비상구 및 피난 통로에는 장애물을 두지 않는다.
- ③ 소방 및 전기 안전: 소방 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, 전기 기구 및 배선은 안전하게 설치·관리하며, 과부하 방지 및 누전 차단기를 점검한다.

제13조 (개인 보호구 지급 및 관리)

사업주는 작업 특성상 필요한 경우, 근로자에게 적합한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고, 근로자는 이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.

제5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

제14조 (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)

- ① 응급조치 및 보고: 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부상자를 구호하고,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, 즉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.
- ②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: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고, 동종·유사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한다.

- ③ 기록 및 보고: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원인 조사 결과,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기록하고 보존하며, 법적 보고 의무를 준수한다.
- ④ 중대재해 발생 시: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고,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준수한다.

제6장 그 밖의 사항

제15조 (게시)

회사는 이 규정을 모든 임직원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비치해야 한다.

제16조 (기타 건강증진 활동)

근로자의 전반적인 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, 절주, 운동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장려하고,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
제17조 (규정의 개정)

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규의 개정, 사업장 환경 변화,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정할 수 있다.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7장 부칙

제18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개정/시행한다.